

2026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군산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취·창업 및 사회진입 촉진을 위한 「2026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군산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6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18~39세 군산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다. 모집기간: '26. 3. 6.(금) ~ 3. 20.(금) 17:00

※ 모집 미달시 추가모집

라. 모집인원: 290명

마. 지원내용

-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생애 1회)
- (구직역량강화교육) 필수교육 및 선택교육 ※ 필수교육 미이수시 선정 취소
- (취·창업성공금)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 (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 단,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

(’26. 12. 21.까지만 신청 가능)

바. 지원방법

- (카드발급)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체크카드) 및 군산사랑상품권 카드
발급(기존 카드 소지자, 모바일 사용자 제외)
- (지급시기) 매월 초
- (지급방식)
 - (포인트) 본인 계정에 매월 25만 포인트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매월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사.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2. 신청 자격요건

가. 연 령: 2025.12.31.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6.1.1.~2007.12.31.)

※ 단, 2007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나. 거 주

- 공고일 기준('26.3.6.)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인 자

다. 미취업(미창업): 공고일 기준('26.3.6.) 미취업(미창업)인 자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25.12.~ '26.2.) 평균 급여(세전) 1,345,210원 이하인 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로 30시간 미만 근무 증명, 직전 3개월 임금(급여)명세서로 월급여액 증명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휴업 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폐업 신고자만 가능

라.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 2025년)
- 2025. 10월 ~ 2025. 12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89,000	127,230	58,386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출처 : 보건복지부)

☞ 산정 방법

1) 가구원수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 ①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또는 모)인 경우 : 부(또는 모), 본인, 피부양자수 합산
- ②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인 경우 : 배우자, 본인, 피부양자 포함 합산
- ③ 건강보험 가입자가 형제인 경우 : 가입자, 본인, 피부양자 포함 합산
- ④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인 경우 : 본인, 피부양자수 합산

2)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25년 10월 ~ '25년 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

<예시> '26년 3월 공고에 따른 가구 중위소득 심사 기준

- ① 가구원수 산정방법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확인
- ②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25년 10월 ~ '25년 12월 건강보험 고지금액 확인
(직장/지역/혼합 구분)
 - (직장가입자) 가구원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 (지역가입자) 가구원 중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 (혼합)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마. 학력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야간대학원)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확인
 - 결혼이민자로 귀화자는 시군 가족센터(다문화지원센터)에서 번역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

3. 선정방법

- 정량평가: 3개 항목(①중위소득 40점, ②미취업기간 40점, ③거주기간 20점) 평가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심사항목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20점	16점
중위소득 (40점)	~90.0%이하	90.0%초과 ~100.0%이하	100.0%초과 ~110.0%이하	110.0%초과 ~120.0%이하	120.0%초과 ~130.0%이하	130.0%초과 ~140.0%이하	140.0%초과 ~150.0%이하
심사항목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20점	16점
미취업기간 (40점)	3년 6개월 이상	3년 이상	2년 6개월 이상	2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심사항목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거주기간 (20점)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 동점자는 ①중위소득 낮은 순, ②미취업기간 긴 순, ③거주기간 긴 순

** 항목별 점수까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우선 지원

4. 신청 절차

- 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접속(<http://jbyouth.ezwel.com>)
- ② 신청 자격 확인(홈페이지 공지)
- ③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등)
- ④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한글파일 불가

5. 제외대상자

구 분	지원 제외 대상
국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 단, 귀화자는 가능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야간대학 포함)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및 학점 인정제는 지원 가능
취·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 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무관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345,210원(세전) 이상인 자 ○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 사업 신청 후 심사기간 중 근로 시작하는 경우 * 사업 신청 후 방학 집중근로(국가장학사업), 학점인정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휴업 신고자 신청 불가, 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 프리랜서(방과후강사, 방문판매, 보험설계, 학습지, 킷, 대리운전 등)
중복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 관련 정부 사업 참여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 중인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직접 일자리 사업,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내일배움카드, 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전북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활동지원금, 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국가보훈처 재대군인 전직지원금, 훈련장려금 등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지원교육 등 그 외 타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일모아시스템 유사사업 참여자 등 * 단, 전북특별자치도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주 30시간 미만이면서 직전 평균 3개월 급여가 1,345,210원(세전금액) 이하인 근로자 가능
기초 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u>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 종료 후 신청 가능 *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해당기관 사전 문의)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기 수혜자 및 수혜기간 중 중단자 ○ <u>상급학교 진학자, 해외 장기체류자(유학, 해외연수 포함), 군 입대 예정 및 군 복무 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비 서류 발급방법 상세내용 반드시 확인

제출서류		주요 확인내용
공통 서류	① 참여 신청서	* 온라인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미 동의시 심사 불가로 탈락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작성 - 모니터링시 주소지 확인, 미동의시 초본 직접 제출(결과보고서에 첨부)
	④ 상호의무 서약서	* 온라인 작성 - 부정수급 방지
	⑤ 구직활동계획서	* 온라인 작성 - 지원동기, 구직활동 목표 및 세부계획
	⑥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자 본인) ※ 신청할 때만 제출, 추후 거주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 거주지 확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필수)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전체포함 필수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기준 확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2025년 기준) * '25.10월~'25.12월 3개월 평균 고지금액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가구원수 확인
	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졸업자 : 졸업증명서 중퇴자 : 중퇴확인서(제적증명서)	* 학력사항 확인 - 해외대학 졸업 중퇴자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⑩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신청자 본인)	* 가입이력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미취업기간 파악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 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부터 공고일까지로 계산 - 공고일 기준 계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한 달로 인정
해당자만 제출	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계약서상 주 근로시간 확인 (급여 등 근무조건 내용이 포함) 단 근무시작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임금(급여) 명세서	* 직전 3개월('25.12.~'26.2.) 평균급여명세서 세전 금액이 1,345,210원 이하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실여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 - 폐업 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5.10월 ~ '25.12월 가구원수 변경자는 가입자(세대주),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26.3.6.)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 유의사항 >

- 서류 제출은 홈페이지(<http://jbyouth.ezwel.com>) 통해 업로드
- 팩스,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휴대전화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공모 신청 서류보완 3회 이상 불응 시 반려 처분

7. 선정 및 발표

- 일 시: 2026. 4. 27.(월)
- 확인방법: 군산시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발송(선발자에 한함)
- 사전교육: 온라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 내 용: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기 간: 2026. 4. 28. ~ 30.(예정)

8. 기타(유의)사항

- 동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또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jbyouth.ezwel.com)에 공고함
- 참여자는 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은 생애 1회 지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 구직역량강화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 사전교육, 구직역량강화 교육 미이수시 선정취소
- 본인이 제시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은 환수함

-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이 종료(중단)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함
- 사업 선정 후 주소지 변경(타 시도, 도내 타 시군)시 지원 중단됨
- 대리결제를 통한 현금화,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중단,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인구대응담당관 청년정책계(063-454-4383) 문의 바람

지자체	부서	연락처	이메일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454-4383	rldjrgo4@korea.kr

※ 접수 시스템 문의: 02-2161-0987

[참고] 구비서류 발급 방법

구비서류 발급 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주민등록 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확인서 /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스마트폰 앱 이용 :“The건강보험”앱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77-10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
고용·산재보험 자격(상용) 이력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출력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부터 공고일까지
최종학력 (졸업·수료·제적) 관련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해당학교 민원실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 * 해외 대학 졸업(제적)등의 경우 공인된 기관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공증 필요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이며 방문 발급시 세무서에서만 발급 가능